

안 전 기 준

합성수지제품

부속서 24

(Plastic products)

서 문 이 기준은 가정 및 공공장소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합성수지제품으로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되거나 접촉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규정한다. 다만, 「식품위생법」과 같은 다른 법과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, 「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」의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합성수지 재질로 된 합성수지제품의 안전요건,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.

2.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. 이러한 인용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.

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

3. 종류

종류는 표 1과 같다. 여기서 합성수지 재질이라 함은 PE(폴리에틸렌), PP(폴리프로필렌), PU(폴리우레탄), PVC(폴리염화비닐), PC(폴리카보네이트), PEVA(폴리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), NBR(니트릴부타디엔고무), EVA(에틸초산비닐 공중합체), ABS, 실리콘 등이 있다.

<표 1> 종 류

구 분	종 류
매트류 (주1)	요가매트, 돛자리매트, 주방매트, 욕실 바닥매트 등
신발류 (주1)	슬리퍼, 욕실화, 깔창 등
기타류 (주1)	휴대폰케이스(주2), 짐볼, 이어폰류(주3), 변기시트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제품

주1) 주 재질이 합성수지로 구성되는 제품에 한함

주2) 휴대폰 곁에 켜워서 본체를 보호하고 미관 등을 꾸미기 위한 용도의 제품

주3) 이어폰류(헤드폰, 헤드셋 등 포함) 중 귀와 직접 접촉되는 부분에 한함

4. 안전요건

4.1 기계적·물리적 특성

4.1.1 결모양

4.1.1.1 모양이 바르고, 찌그러짐,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고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.

4.1.1.2 색상은 선명하고 색 얼룩이 없고 균일하여야 한다.

4.1.1.3 눈에 띄는 흠, 조각 등 상처가 없어야 한다.

- 4.1.1.4 인쇄 및 표시는 선명하여야 한다.
- 4.1.1.5 때, 거칠음, 먼지 등이 없이 끝손질이 양호하여야 한다.
- 4.1.1.6 터짐, 잔금이 없어야 한다.

4.2 유해물질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.

<표 2> 유해물질 안전요건

유해물질		허 용 치
유해원소 함유량	총 납(Pb) ¹⁾	300 mg/kg 이하
	총 카드뮴(Cd)	75 mg/kg 이하
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	DEHP	총합 0.1 wt% 이하
	DBP	
	BBP	
1. DEHP(Diethylhexyl Phthalate,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) 2. DBP(Dibutyl Phthalate, 다이부틸프탈레이트) 3. BBP(Butyl benzyl Phthalate, 부틸벤질프탈레이트)		
비고 1.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/kg 이하		

5. 시험방법

- 5.1 결모양 육안으로 확인한다.
- 5.2 유해물질
 - 5.2.1 유해원소 함유량 "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"에 따른다.
 - 5.2.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"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"에 따른다.

6. 검사방법

6.1 모델의 구분 합성수지제품의 모델은 종류별, 주재질별로 구분한다. 다만, 재료시험을 위한 합성수지 색상만 다른 경우 동일모델로 간주하되 재료항목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다.

7. 표 시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소형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되어 표시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에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표시사항 및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.

- 7.1 모델명
- 7.2 재질
- 7.3 치수 (해당 제품에 한함)
- 7.4 제조연월
- 7.5 제조자명
- 7.6 수입자명 (수입품에 한함)
- 7.7 주소 또는 전화번호(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,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)
- 7.8 제조국명 (수입품은 대외 무역법에 의거 표기)
- 7.9 사용상 주의사항

제	정 : 국가기술표준원고시	제2019-0352호 (2019.10.29.)
개	정 : 국가기술표준원고시	제2022-629호(2022.12.14.)